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00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박용갑 · 윤준병 · 정준호
김병주 · 서영교 · 서영석
조인철 · 노종면 · 이용우
이해식 · 최혁진 · 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지역의료의 위기 심화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연간 약 4.6조원의 막대한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원인임.

한편,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제공, 의료인력 양성, 의학 연구를 비롯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미흡 등으로 시설·장비의 노후화, 협소화로 근본적인 역량 개선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최근 정부도 국립대병원의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이관, 전담 과 신설 등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 의료인력의 확충·양성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수립, 부속 연구소의 설치·지원 및 병상총량제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실질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 라.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 발전위원회를 둠(안 제1조의4 신설).
- 마.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
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병상총량제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조의3(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4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수행 방안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조정관리

3. 의료인력의 확충 및 양성

4. 제8조에 따른 사업

5. 국립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대학병원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4(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①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병원장,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중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을 “대학병원

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부속 연구소의 설치) ①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속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속 연구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병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의료법」에 관한 특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병상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신설>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 제1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1조의3(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4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수행 방안

<신 설>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
의료 전달체계의 조정관리

3. 의료인력의 확충 및 양성

4. 제8조에 따른 사업

5. 국립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
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
합계획에 따라 대학병원 발전
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
른 시행계획에 따라 국립대학
병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4(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
회) ①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
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신 설>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병원장,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법인격) 대학병원은-----

제5조의2(부속 연구소의 설치) ①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속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속 연구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병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u><신 설></u>	<u>제23조의2(「의료법」에 관한 특</u> <u>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u> <u>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u> <u>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u> <u>병원은 「의료법」 제60조에도</u> <u>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u> <u>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u> <u>다.</u>
--------------------	--